

보도시점 2024. 12. 27.(금) 14:00
< 12.28(토) 조간 >

배포 2024. 12. 27.(금)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 벽 높인다!

-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2월 27일(금)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제5차 종합계획) 및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안) 등 의결안건 총 6건을 심의하고 국가핵심기술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5차 종합계획】

위원회는 첨단기술 개발·확보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기술보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5차 종합계획을 수립·의결하였다.

① 보호해야 할 기술과 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관리 고도화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적층세라믹 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배터리 분야),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및 검증기술(우주 분야) 등 국가안보·국민경제 관련성이 높은 유망기술들을 신속히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핵심기술에 소재분야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소부장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로 포함하여 보호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고 기술 분석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을 위한 산업분석, 기술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리도 강화한다. 기술보유 확인제 및 등록제 도입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예상 기업을 신속히 식별하여 보호제도로 내로 편입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이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보유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확대하여 관리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보안역량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심의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기술보호 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② 국가핵심기술 수출·M&A 심사제도 정비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기술유출 수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심사체계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 M&A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에 M&A 분야를 신설하고, 미승인·미신고 수출 및 M&A에 대해서는 산업부장관이 직권으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국내기업의 국가핵심기술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업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수출심의 제도를 정비한다.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핵심기술 수출행위에 대해서는 수출심의 절차를 일부 간소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간소화가 적용되는 세부 수출유형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빠른 시일내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심의 기간 단축을 위해 기술심사 상한제(45일, 최대 1회 45일 연장)를 도입하여 신속한 기술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수사재판 전문성 강화 및 합리적 처벌

해외유출 범죄 구성요건 완화(목적범→고의범), 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15억→65억) 및 징벌적 손해배상한도(3배→5배) 확대 등 기존 처벌 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제거한다.

기술유출 범죄의 조·수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을 적극 활용하여 공조를 강화하고, 산업기술 유출 범죄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필요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법원의 관할집중 대상에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추가하여 재판 전문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④ 대학·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 및 인력관리 체계 고도화

보안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학·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 인프라 구축, 보안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민감과제 신설 등을 통한 국가R&D 관리 강화, 스타트업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 확대 등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보호체계를 내실화한다.

대부분의 기술유출은 ‘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핵심인력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관련 핵심인력을 식별하고 기술유출 정황 발생 시에는 신속히 관계기관과 공유한다. 안보상 우려가 있는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비자심사 강화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특허심사관 채용 등 핵심인력에 대한 지원방안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국가핵심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획】

또한, 위원회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대한 보호조치 등 규정이 미비해 발생했던 업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방안을 논의하였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클라우드 사용은 허용하면서도 기술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지침(산업부 고시)」에 클라우드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보호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초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보호조치는 ▲기술자료의 저장 공간 위치, ▲정보주체

및 사용자 권리, ▲사고시 대응절차,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업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 수출승인】

한편,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바탕으로 반도체분야 2건, 이차전지 분야 2건, 자동차·철도분야 1건 등 접수된 총 5건의 국가핵심기술·첨단전략기술 수출승인 안전에 대해 심의하였다.

이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국들은 국가·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자국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안보 체계를 내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오늘 수립한 중장기 기술보호 정책방향을 근간으로 우리의 기술보호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	책임자	과 장	손용하 (044-203-4850)
		담당자	사무관	여정모 (044-203-4856)
			사무관	임재원 (044-203-4852)
			사무관	강정웅 (044-203-4854)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4.12.27(금) 14:00 / 서울(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참석자) 통상교섭본부장(주재), 보호위원회 위원 및 기업관계자 등
- (절차·방식) 안건별 담당부서 보고, 분야별 토의 후 의결

시간	진행계획	비고
14:00~14:05	■ 개회 및 모두발언	언론공개
14:05~15:15	■ 의결안건(총 6건) 상정 및 심의·의결 ■ 보고안건(총 1건) 발표 및 토의	언론 非공개 보고자:안건 소관과
15:15~15:20	■ 마무리발언 및 폐회	

2. 상정 안건 : 의결안건(6건) 및 보고안건(1건)

- (의결 1호) 제5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안)
 - * 「산업기술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종합계획 : 공개
- (의결 2~3호: 반도체) ^{2호}해외 자회사, ^{3호}외주업체 생산을 위한 국가첨단 전략기술 자료이전
- (의결 4호: 자동차) 해외 자회사 생산을 위한 국가핵심기술 자료이전
- (의결 5~6호: 이차전지) 해외 자회사 ^{5호}생산, ^{6호}ERP 통합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전략기술 자료이전
- (보고안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클라우드 이용계획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올해 두 번째 개최되는 대면 위원회이며,
서면까지 합치면 11번째 위원회입니다.

작년 7회에 그쳤던 개최 횟수가 늘어나면서
수출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내외 기술보호 환경]

세계는 자국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달 초,
미국은 첨단 반도체장비와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다음날 바로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핵심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대미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로 응수했습니다.

우리도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실태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 11월 까지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건수는 21건으로
유출 추이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5년동안 기술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액은
약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향후 3년간의 기술보호 정책방향을 담은
「제5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과,
5건의 기술 수출승인(안)을 심의하고,
업체가 요청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클라우드 이용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술보호 정책방향]

향후 기술보호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 보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단기술은 기술개발 속도가 빠른 만큼,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신속히
보호대상 기술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파악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기술유출 범죄 특성상,
유출 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처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유출 정황을 신속하게 포착한 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리적인 처벌까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은 줄여서 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을 한해 저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가핵심기술 수출심사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기술보호의 궁극적인 목표가
산업과 국가경쟁력 강화인 만큼,
과도한 기술보호 부담은 완화하여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달에 긴급하게 서면으로 진행한 제57회 보호위는
우리 배터리 업체의 미국 현지공장 설립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기업들이 신속한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인식과 방향을 토대로,
「제5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종합계획상의 실천과제가 포함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24일 법사위에서 의결되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산업기술보호 제도를 한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제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